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6
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30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4월 11일, 김용석(서초4)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: 2011년 4월 12일
- 다. 상정일자: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
(2011년 6월 3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자: 김용석(서초4)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 구성 방법을 명시하고,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관련 명칭을 수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 구성 인원 및 방법을 명확히 함(안 제22조제1항).
- 서울시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수정함(안 제24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“당연직(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기획관과 도시경관·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) 위원 3명”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.

- 동 개정조례안 제24조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“디자인기획담당관”과 “디자인기획담당관의 담당사무관”에서 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사무관”으로 변경한 것은 이 조가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문예진흥위원회의 “간사 및 서기”와 직급을 맞추고 서울시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.
- 동 개정조례안에서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수정하면서 제4조제2항의 “문화국장”이 수정되지 않았으나, 6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부칙이 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리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 제목 및 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구성 및 임기)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당연직(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기획관과 도시경관·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) 위원 3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운번제로 운영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운영)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간사와 서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사무관이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구성)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서울 특별시의회 의원 5인과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윤번제로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24조(운영)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<u>간사는 디자인 기획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디자인기획담당관의 담당사무관이 된다.</u></p>	<p>제22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<u>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당연직(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기획관과 도시경관·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) 위원 3명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회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윤번제로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운영)----- ----- -----<u>간사와 서기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및 담당사무관이 된다.</u></p>